

##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이 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

윤 옥 경

사회과학부 교정학

본 문헌연구에서는 범죄위험성의 평가절차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어떤 문제들이 상존하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내 형사소송 절차의 개별 단계상에서 위험성의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나아가 재범예측을 위한 위험성 평가의 최근 추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표준화된 외국의 위험성 평가도구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들의 재범예측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이런 도구들과 비교하여 국내의 위험성 평가절차는 어떤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주요어: 위험성 평가, 재범예측, 전문가 증언

죄질의 경중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잠재적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미래의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더욱 불가능하게만 보인다. 하지만 범죄예측이 현대 형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까닭은 그것이 형사정책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성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의 위험이 있음(Monahan, 1981, 1984, 1993, 1996)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범죄적 위험성의 측정과 예측은 수형자의 선별구금, 보

호관찰부 형의 선고와 집행의 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 또는 각종 전환제도 등 실제 형사절차 상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위험성의 측정을 토대로 한 범죄의 예측은 예방단계, 수사단계, 재판단계, 그리고 교정단계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서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식별하여 그들의 범죄성 발현이나 심화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사단계에서의 범죄의 예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2년도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과제 (KRF-2002-013-C00141)의 연구 지원금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suejung@kyonggi.ac.kr

측은 수사의 종결 시 범죄자의 처리나 처분을 결정할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특히 소년범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의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 활용된다. 재판단계에서 역시 범죄성의 측정 및 예측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처우나 형벌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재범가능성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단계에 있어서는 개별화된 재범위험성의 측정을 통해 적절한 교화 개선의 방향에 대한 설정과, 궁극적으로는 이차적 범죄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위험성 평가체제

범죄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되는 분류체제들은 수없이 많지만, 전통적으로 보자면 크게 두 가지 평가체제로 나뉜다. 정신의학적 예측법과 통계적 예측법이 그것이다. 가장 전통적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정신의학적 예측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판단의 과정이 상당히 직관적이라는 것이다. 정신의학적 위험성 예측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83년 미국 대법원의 Barefoot에 관한 판례이다 (Barefoot v. Estelle. 77 L. Ed. 2d 1090 [1983]). 경관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던 그는 마약과 불법적인 총기 소재로 구속되었던 경력이 있었고 어린아이에 대한 강간미수로도 복역했다가 탈옥한 경력도 있는 위험수였다(박광배, 2001, 재인용). 결국 하급심에서 내려진 사형선고를 확정하기 위해 재판부는 정신과 의사였던 James Grigson에게 Barefoot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Dr. Grigson은

Barefoot의 재범가능성을 100%라고 판정하여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다.

정신의학적 위험성 예측은 Barefoot의 사례에서처럼 대상자의 현재 인격상태와 환경조건 또는 과거의 성장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재범가능성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방법을 흔히 전체적 평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정신의학적·직관적 예측법은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직업적 전문성에만 주로 의존한다. 즉 정신의학적 예측은 그 어떤 통계적·경험적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판단 근거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해 다양한 의문점(e.g., Dawes, Faust, & Meehl, 1989, 1993; Grove, Zald, Lebow, Snitz, & Nelson, 2000; Grove & Meehl, 1996)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험성 판단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높은 수준의 가긍정율을 지니기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통계적 예측법은 대개 범죄자와 비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재범과 관련이 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체계화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소위 범죄예측표라고 불리우는 일정한 범인성 인자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개인의 위험요소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해낸다. 이렇게 범죄통계표에 의한 예측은 과거의 많은 사례에 대한 실제적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잇점이 있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직관적인 전문성 대신에 경험적인 자료에 대한 사전분석을 근거로 위험요인을 산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훈련기간

을 거치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재범예측에 있어 범죄통계학적인 변수들의 예언타당도는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Hoffman, 1994; Grann, Belfrage, & Tengstrom, 2000). 허나 치료를 목적으로 수형자들의 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 주로 정적 위험요인(static risk factor)만으로 구성된 통계학적인 위험요인들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역동적인 위험성 인자(dynamic risk factor)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진단이 처우의 적용적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Andrews & Bonta, 1998; Gendreau & Ross, 1987). 역동적인 위험요인은 전과나 본 범 내용 등 범죄경력 이외의 사실들, 예컨대 약물의 사용 여부와 약물 종류, 고용상황, 반사회적 경향을 포함한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태도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역동적 위험요인을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토대로 판단하기도 한다.

### 수사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

범죄의 수사단계에 있어 수사를 종결시키는 경우 범죄자의 처리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의 필요성이나 개입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행성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Farrington(1987)은 청소년의 비행가능성을 평가, 예측한 논문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추출한 바 있다.

- ① 문제행동가능성, 부정직, 공격적, 반사회적 행위
- ② 부모의 양육태도 - 방임, 잔인하거나 가혹한 태도, 변덕스러운 훈육, 부적절한 관리감독

- ③ 부모나 형제의 전과 혹은 비행력
- ④ 불안정한 가족구조 - 이혼이나 조기 별거로 인한 결손가정
- ⑤ 낮은 가계 소득, 대규모 가족, 열악한 주거환경, 부모의 불규칙한 취업상태, 이로 인한 사회적 박탈
- ⑥ 저지능, 낮은 학업성취도,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우리나라에서도 재범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위의 위험요인과 유사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집하고 있다. 비행소년에 대한 훈방조치는 주로 파출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나 경찰들의 이런 의사결정을 위하여 따로 제작되어 시행되고 있는 표준화된 재범예측 도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의 위법성, 소년의 비행경력이나 보호자의 관리감독의 의지 등이 주요 준거로서 사용된다고 한다. 훈방이 된 소년을 제외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서 실시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 소년범 환경조사서, 비행성예측자료표, 피의자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발생통계원표와 지문을 찍은 카드, 소년사건처리부, 소년신상조사표 등이 작성된다(이춘화, 2001: 117). 여기서 재범위험성의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소년범 환경조사서와 비행성예측자료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두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범예측이 어떠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소년범 환경조사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과 교우관계, 성장과정과 성격, 소행변화, 그리고 개전의 정 유무 등이 기입된다. 비행성예측자

료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소년의 과거비행경력과 교우, 학교생활 등 환경을 조사하고 있는데, 각 조사항목에 점수를 주어 합산된 점수에 따라 비행위험성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생계담당자가 부모라면 0점이, 부모 이외의 사람이라면 6점이 부여되며, 의무교육의 이수여부에 따라 취학을 하지 않았거나 중퇴를 한 경우에는 7점을 부여받게 된다. 1주일 이상의 장기결석 경험이 있는 소년에게는 9점이 주어지고, 경찰에 단속되거나 무위도식하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일 때는 5점이, 2명 이상일 때는 8점을 부여하고 있다. 가출경험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가출경험에는 8점이 주어지고, 14세 미만의 연령에 법률저촉행위를 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16점이 부여된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종합판정이 나오면 이러한 판정을 바탕으로 경찰은 처분의견을 기록하게 되는데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소년부송치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된 문서들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단계에서 작성된 이 비행성예측자료표는 검사의 처분결정에 근거 자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담당검사들의 처분 결정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고려되는지에 대하여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또 한 해당 소년범들의 개별 위험성 인자가 소년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성을 지니는 지에 관하여서도 실증적인 증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결정과 위험성 평가

검찰단계에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

예시키는 경우 피의자의 죄질은 여러 각도에서 평가받는다. 미국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결정을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일명 검찰관리정보체계라고 불리는 사건 평가표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자면 피의자의 죄질은 본 범의 특성, 즉 현재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피의자의 과거 범죄경력이 검사가 사건 처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주요한 기준이 된다. 본 범의 심각성 여부는 피해자의 수, 부상 정도, 협박의 유무에 의해 주로 판정되며, 이 외에도 무기 사용의 정도, 재물의 소실, 피해자와의 관계, 검거된 시점, 증거물, 목격자에 의한 피의자 확인 여부 등이 주요 인자로 고려된다. 반면 피의자 특성은 과거 범죄로 중형을 받았는지, 동일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무기를 사용했던 적이 있는지, 체포 당시의 신분상태(기소유예나 가석방 상태인지) 등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인 논리는 본 범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과거 범죄전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소확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찰에서 사건기록과 함께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할 것이냐 보호사건으로 할 것이냐의 법률적 판단기준은 검사가 볼 때, 벌금 이하의 형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또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소년법원(부)에 송치를 하게 된다. 소년부 송치

표 1. Bronx 재판 전 사건 평가표

1. 사건특성	2. 피의자 특성
피해자수 1인 이상 ( ) 2.0	중형 유무 1회 이상 ( ) 9.7 2회 이상 ( ) 18.7
피해자의 부상 정도 경미 ( ) 2.4 치료 후 입원 ( ) 3.0 입원 ( ) 4.2	경범 처벌 유무 1회 ( ) 3.6 2회 이상 ( ) 8.3
협박 유무 1인 이상 ( ) 1.3	체포 경력 - 동일범행 1회 ( ) 2.2 2회 이상 ( ) 4.2
무기소지 여부 무장 ( ) 7.4 총격, 총기 혹은 폭발물 소지 ( ) 15.7	체포 경력 - 총기 소지 혐의 2회 이상 ( ) 6.4
절도 물건 유무 있음 ( ) 7.5	체포 시 신분 보호관찰 중 ( ) 7.1 수배 중 ( ) 4.2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 ( ) -2.8	
체포경위 현장에서 체포 ( ) 4.5 24시간 이내 체포 ( ) 2.9	
증거 자백, 진술 ( ) 1.4 추가 증인 ( ) 3.1	
신분확인 라인 업 ( ) 3.3	
사건 총점:	피의자 총점

결정이 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이라 부르는 데, 소년보호사건의 판결에 있어서도 비행 소년의 개선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제도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재판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 이외의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조건없는)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 또는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위험성의 측면과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오영근, 1998). 소년선도보호지침에 의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과 기준은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경찰이 작성한 사건기록과 함께 환경조사서와 비행예측자료표가 판단의 자료가 되며 검사는 소년을 직접 심문하여 재범가능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검사의 최종결정 전에 전문가에 의한 조사의 단계를 한 번 더 거치는 사례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푸른 상담실”을 설치하여 청소년/범죄 관련 연구자(대학교수와 연구원 등)들과의 상담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위험성과 환경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 상담내용을 보면 가족구성 과 부모의 결혼상태, 친부모 여부, 가정의 수입과 주거상태, 가족화목도와 가출과 외박경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해소방법, 학교생활, 성적, 교사와의 관계, 취업경험 및 장래희망, 친구관계, 이성관계, 절도, 약물, 폭력 등 비행 경험, 범죄전력, 그리고 본 범죄의 사실과 이유 등 상당히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룬 후에 상담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상담기록이 실제로 검사의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범죄청소년의 환경과 비행경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측정해 보려는 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터뷰의 형식을 띄다보니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따라서 재비행 예측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 재판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

재판과 판결에서 범죄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형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먼저 형법 59조 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등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형법 제 51조에 근거)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고 정상참작의 이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이유에는 범죄위험성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동 형법 제 59조 2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피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의 평가가 꼭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런 의사결정은 궁극적으로 피고를 사회로 복귀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한편 소년법에 대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형사법원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판결전 조사(pre-sentence inquiry)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내리면서 보호관찰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감독과 준수사항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전 조사는 법원이 요청하고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게 되는데 판결전 조사서에는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과 함께 범죄경력과 가족관계와 생활정도, 성장과정, 정신 및 신체상태,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판결전 조사서에는 범죄원인과 재범위험성,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적격성에 관한 조사담당 보호관찰관의 의

건이 첨부된다(이춘화, 2001:140-144)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위험성의 평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재적응의 기회와 보호관찰 자격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관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를 완결하면(참조, 표 1), 이를 기초로 판사가 형의 기간과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체로 피고가 재범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법을 준수하고 보호관찰의 조건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미한 범행을 한 초범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과밀수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부 강력 범죄자에게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이 수용공간의 한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하나 불행하게도 이들 보호관찰을 받은 강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대단히 높아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판사 등이 최선의 보호관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명된 도구나 평가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실 보호관찰의 활용이 확대되면 판사가 어떤 범죄자에게 자유형을 선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과 감독을 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빈번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재판단계에서 재범위험성이 법원판결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또 다른 경우는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감호처분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보호법의 목적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

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와 사회보호를 달성하는 것이다(제1조). 따라서 감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저지르고,’ 상습성이 있을 경우 7년 이내에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상습적인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최근에 와서 폐지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것은 재범위험성의 측정이 범죄경력에 과도하게 근거한 반면, 재범위험 측정의 질적인 측면(범죄성향이나 태도, 그리고 사회적 위해도 등)이 간과되어 실제 사회보호법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절도범 등 잡범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은 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측정의 문제가 대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범예측 정도를 수량화할 때 한 측에는 양적인 재범위험(전과)을 두고 다른 한 측에는 질적인 위험도(다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피해나 성격특징, 환경정도에 따라 점수부여)를 놓고 그 교차점을 재범위험도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의 범죄 위험성 측정에서 범죄와 범죄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소년사건의 경우에 재판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제도를 하나 더 가지고 있

다. 검찰에서 소년부송치를 한 사건들(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분을 결정하기 앞서 소년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에 대해 조사를 위해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된 소년들은 1개월 정도 수용이 되어 여러 가지 검사와 교육을 받게 된다.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비행성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교정처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류심사원의 활동은 과학적 범죄위험성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는 심리검사, 신체검사, 정신의학진단법, 행동관찰, 면접 및 관련자 현지조사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심리검사의 경우에 MMPI 검사와 Rorschach검사, 주제통각검사(TAT), 형태지각검사(BGT), 묘하검사(HTP)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춘화, 2001:137). 더불어 지능검사와 욕구진단검사, 적성검사 등을 병행되는데 검사지와 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하고 있다. 각종 검사와 면접이 종결되면 분류심사관은 검사결과와 관찰, 면접결과를 토대로 분류심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재비행예측에 대해 의견을 쓰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 통지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보호처분 결정의 자료로 이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리검사들 중 투사기법들은 판단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외국의 경우 위험성의 변별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표준화된 심리검사들 중에서도 MMPI는 재범예측을 위한 변별도구이기보다는 처우의 적용을 위한 진단도구로서 더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현행 분류심사 지표들의 적절한 사용법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보다 신중하게 연구

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 행형단계에서의 시설분류와 위험성 평가

최근의 연구는 역동적인 요인들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범죄자들의 분류 및 처우의 적용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지적하였다(Bonta & Cormier, 1999). 연구자들은 범죄행동과 관련된 심리역동적 측면을 보다 더 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실제로 위험성의 진단과 재범의 예측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Van Vooghis, Braswell, & Lester, 2000). 이미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여 위험성을 분류한다거나(Quay, 1984; Megargee, 1994), 재범위험성과 특히 연관이 있는 심리학적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Hare, 1991) 이를 범죄 통계적인 근거자료들을 토대로 재평정한다거나 하여 위험성의 평가와 재범의 예측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의 범죄적 특성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측면의 평가가 범죄통계적 위험요인 이외에 재범의 부가적인 변량을 조금 더 설명하여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Hoge, 1999; Loza, Dahliwal, Kroner, Loza-Fanous, 2000). Van Voorhis 등 (2000)은 범죄자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체제를 다음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하고 있다.

1. 정적 위험성 평가체제: 주로 보안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위험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나 범죄행위 관련 통계자료(actuarial data), 즉 정적 위험요인에 주로 근거한다.
2. 요구 평가체제: 범죄경력보다는 수형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직



업훈련이 필요한지, 교육이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주로 조사한다.

3. 역동적 위험성 평가체제: 성격이나 행동적인 준거를 근거로 하여 치료나 처우를 적용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적 위험요인을 토대로 수형자마다의 역동적인 위험요인의 추출에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처우의 수혜자가 지닌 역동적인 위험요인 특성과 처우의 내용이 잘 들어맞을 수 있도록 조정될 때만이 교정 치료 프로그램의 효력이 최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Gendreau, 1996).

행형단계에서 재범위험성의 예측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보호관찰자 분류에 있어서의 재범예측의 역할이고 하나는 시설수용자의 분류에 있어서의 재범예측의 역할이다.

먼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독과 재범방지를 위한 분류에 대해 보면, 97년 이전에는 성인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다른 분류처우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7년 1월 1일 이후의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지도지침은 성인과 소년 구별없이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진수명, 2001: 190). 분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순응정도, 재범위험성, 개선가능성, 환경 등을 참고하여 행해진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일반관리대상자(B급)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부류이고, 주요관리대상자(A급)은 재범가능성이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한 등급이며, 추적조사대상자(A중)은 소재를

파악하여 필요시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자 군이다. 그런데 재범위험성의 판단이 분류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검사와 성격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범 예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성과 연령, 범죄내용과 심각성(범죄유형) 등이 고려된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예측도구의 개발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진수명, 2001: 191).

한편 시설에 수용되면 관리와 처우를 위한 분류가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조사와 분류가 이루어진다. 수형자의 분류에 대해서는 수형자 분류처우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자에 대해 분류심사를 하는 것은 “수형자의 개성과 능력, 교육정도,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개별처우의 적정을 기하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입자에 대한 분류는 미래 재범위험성의 측면보다는 수용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 보인다. 분류처우 규칙 제 7조에 따르면 분류심사는 ① 사고발생 가능성 여부 등의 보안상 위험도, ② 적절한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③ 알맞은 작업종목의 결정, ④ 보건, 위생상태 점검, ⑤ 석방 후 보호대책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분류지표를 보면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생활과정(12점)은 가출, 양육형태, 유해물 흡입, 문신이나 성기변형의 항목이 포함되며, 교육 및 직업과정(8점)에는 교육기간, 성적, 중퇴여부, 직업경력이 포함되어 있다. 본 범 내용(32점)은 형기, 범죄동기, 흥기사용여부, 합의여부, 검거유형, 피해정도, 공범여부, 미결수용 시 생활

태도가 포함되는데 범죄동기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 범죄경력(30점)은 최초범죄연령, 범죄경력, 반사회성집단소속, 교정시설수용기간과 재범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범죄경력에 가중치가 상당히 부여되어 있다. 심사평점(18점)에는 인성검사와 상담평점이 속해 있다(법무연수원, 2002: 267). 이 6개 측면의 총점을 바탕으로 수형자 분류가 행해지는데 네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진다. 그것은 A급인 개선가능자, B급인 개선이 곤란한 자, C급인 개선이 극히 곤란한 자와 급수를 정하기 어렵거나 필요성이 적은 사람들은 D급으로 분류된다. 수용자의 신입시 분류는 수용생활 적응과 보안의 효율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며, 재범위험성이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가석방 결정과 위험성 평가

재범예측이 다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시점은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때이다. 가석방의 요건에 대해서는 형법 72조에 규정되어 있으

며 이에 따라 가석방에 대한 기본요건이 갖추어진 수형자 중에서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거나 또는 재범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수형자들은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행형법시행령 제 153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동기, 형기, 수형생활 중 행장, 가석방 후의 생계수단과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최근의 교정국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석방 심사기준이 주로 범죄사실을 위주로 이루어져서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1998년 5월에 이르러 심사기준이 재범가능성 유무로 전환되었다(교정국 2003: 102)고 한다. 즉 가석방 심사의 기준이 본 범의 죄질보다는 수형생활 중의 자격증 취득이나 생계수단의 습득 혹은 해당 수형자의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하여 미래의 재범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수형기간 동안의 수형자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사회적

표 2. 미연방 가석방 지침(Federal Parole Guideline)

항목 A :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	없음	= 3
	한번	= 2
	두 번 혹은 세 번	= 1
	네 번 이상	= 0
항목 B : 30일 구류 이상의 형이 집행된 전력	없음	= 2
	한번 혹은 두 번	= 1
	세 번 이상	= 0
항목 C : 최근 범행 당시의 나이	26세 이상	= 2
	20-25세	= 1
	19세 이하	= 0
	30일 구류 이상의 범행 없이 3년	= 1
항목 D : 현재의 범행 전에 범죄 없이 지낸 기간	그 외	= 0
	없음	= 1
항목 E : 현재 집행유예/가석방/연금 규칙 위반 탈옥시도가 병합하는 지의 여부	있음	= 0
	없음	= 1
항목 F : 마약중독의 전력	없음	= 1
	있음	= 0
총점:		

귀를 앞당길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일반시민들 역시 재범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석방이 되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재범에 대한 예측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져서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 예측된 기준을 바탕으로 가석방이 결정된다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조기석방 결정을 위하여 다양한 곳으로부터의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수형자들에 대하여 개별화된 재범예측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대체로 위원회에서 재소자의 구두정보에 거의 의존하여 해당 재소자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허나 미국의 경우 재범예측표(표 2)를 판단의 준거로 사용하고 있다. 표 2에 제시된 미연방 가석방 지침의 경우, 범죄자의 범죄행위의 심각성, 즉 죄질과, 범죄자의 보호관찰 위반 가능성, 즉 잠재적 위험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적용하고 있다.

죄질에 근거하여 주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작된 미연방 가석방 지침과는 달리

표 3. 미주리주 가석방위원회의 보호관찰 예측표

1. 교육/ 직업		
일하지 않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음		1점
학업·작업훈련 중이거나 시간제로 일함		4점
정규 직업, 퇴직, 또는 주부		6점
2. 법률적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유죄 혹은 두 번 이상의 체포 경력		1점
유죄 확정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 해 한 번 체포됨		3점
지난 해 체포나 유죄 받은 적 없음		4점
3. 특수문제		
약물 복용,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기타 특수문제		0점
심각해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능력 보유 또는 치료 중		2점
아무런 문제 징후 없음		4점
4. 가정/ 사회		
중대한 해체		1점
약간의 해체 조짐은 있으나 성장가능성 있음		3점
비교적 안정된 관계		6점
5. 공격적/ 폭력적		
1년에 한 두 번 폭력 관련 사건		1점
지난 해 폭력 관련 사건 있음		3점
지난 해 아무 사건 없었음		4점
6. 책임감		
사회의 기대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음		1점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		4점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		6점
7. 약물, 알코올		
문제 있음		0점
문제 없음		1점
총점		
판단기준	( ) 4-16	심각
	( ) 16-25	중간 정도
	( ) 25-31	경미

미주리 주의 가석방위원회가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보호관찰 예측표 (표 3)는 주로 범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의 결정을 내린다. 이런 형태의 보호관찰 예측표는 가석방의 유무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까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표에 따르면 직업도 없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거나 전과경력이 많고 약물남용 문제가 있으며 가족이 해체되었고 한두 번 폭력이나 공격적인 사고를 친 적이 있고 책임감이 없는 범죄자일수록 가석방 가능성은 낮으며 보호관찰의 강도는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소 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는 정리된 적이 없었던, 범죄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광범위하게 소개하려는 것이다. 물론 재판의 절차에 따라 관심을 두는 범죄성향의 측면이 다를 수 있겠으나 굳이 사법적인 의사결정 단계의 목적적 구분 없이 각 단계마다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위험성의 평가방식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각 체제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범죄위험성의 평가기준을 정리하여 보자면 크게 두 가지 맥락을 찾아낼 수 있다. 해당 사건의 심각성 정도와 범죄자 개인의 범죄성향이다. 이중 전자는 형벌의 응보적 기능을 중시하는 판결단계에서 주요한 판단지표가 된다. 허나 후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해당 피고 혹은 수형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단계에서 재

범예측과 관련지워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는 현대의 형벌론이 단순한 처벌의 개념을 넘어서 범죄자의 범죄성에 대한 치료 및 재범의 예방을 광의의 목적으로 포함시키게 된 까닭 때문이기도 있다 (참조 이운호, 1999). 그것이 의료적인 치료행위이든 정신의 개조이든 궁극적으로 행동변화를 야기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치료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적 위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행형의 단계, 특히 처우의 적절한 적용 및 진척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이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범죄위험성의 평가 및 분류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호국 교정국 등 해당 부처에서 각기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각종 변별의 도구들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자면 보호국에서는 투사기법까지의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교정국에서는 한동안 MMPI를 수형자 분류에 참조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평가도구들의 활용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변별 절차의 목표 달성에 이들 도구들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하는가 하는 경험적인 증거들에 달려 있다. 만일 위험성 평가척도가 재범을 예측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었다면, 피평가자가 일정 기간 후 과연 재범을 하였는가 하는 행위의 유무가 준거지표가 될 것이고, 수형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을 예측해내는 것이 평가의 목표였다면 교도소에서의 규율위반 횟수가 준거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허나 위험성 평가의 목적이 재범예측을 위한 잠재적 범죄성의 변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와 같은 진단적인 목적으로 수형자들의 특성을 분류하는 것이라면, 수형자들의 시설 내의 적용의 정도나 처우프로그램에서의 성취도 등이 광범위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평가목표와 변별도구들의 용도가 과연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다양한 평가의 도구들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다음절에서는 외국의 경우 특히 법정에서의 의사결정 단계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되었거나, 굳이 법정에서의 정신감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도로 다시 재해석이 가능한 평가의 도구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위험성 평가의 절차들을 기획·개발하거나 조합하여 사용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특성들을 철저히 반영한 위험성 예측도구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도구들이 과연 어떤 구인영역들을 측정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재범예측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정적 위험요인에 근거한 위험성 평가체제

앞에서도 잠시 논의되었지만 판결단계에서 참고되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은 선고전 사건 평가에서는 주로 본 범의 특성과 해당 범죄자의 범죄경력이 양형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흐름에 따라 범죄자의 이 같은 정적 위험요인이 본 범의 사건기록보다 좀더 중요시되는 위험성 평

가지표들도 있다. 표 4에 제시된 SIR(Statistical Information in Recidivism)이나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Wisconsin 주의 위험성 평가지표(WRAS; Wisconsin Risk Assessment System) 등이 좋은 예이다.

표 4. SIR(Statistical Information in Recidivism)

본 범 내용	폭행전력
절도	없음
가택침입	있음
도주	두 번 이상
해당사항 없음	혼인 여부
초범연령	기혼 혹은 동거
21세 이전	독신
39세 이후	바로 전 범행을 저지른 시기
해당사항 없음	6개월 미만
과거 수용경력	2년 이상
none	해당사항 없음
3-4번	합산한 총 형기
5번 이상	5-6년
과거 가석방 유무	6년 이상
있음	해당사항 없음
없음	과거 성폭행 유무
탈옥 전력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과거 가택침입 유무
위험수로 분류되었던	없음
전력	1-2
있음	3-4
없음	5번 이상
최초로 기소된 연령	
19세 미만	
19-23세	
23-30	
31-40	
41-49	
49세 이상	

Baird 등(Baird, Heinz, & Bemus, 1979; Baird, Prestine, Klockziem, 1989) 이 개발하였던 Wisconsin 주의 WRAS은 가석방이나 보호관찰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SIR(Nuffield, 1989)은 캐나다에서 가석방 결정을 위한 위험

표 5. Wisconsin Risk Assessment

적절한 답을 선택하고 그에 배정된 점수를 기록하십시오. 그 후 각 위험항목 점수를 합산하십시오.

점수

지난 12개월 동안의 주소 이전 횟수: .....	0 없음
(입소하기 전)	2 한 번
	3 두 번 이상
지난 12개월 동안 취직되었던 시간의 비율: .....	0 60% 이상
(입소하기 전)	1 40% - 59%
	2 40% 이하
	3 해당 사항 없음
음주습관: .....	0 아무 지장 없음
(입소하기 전)	2 때로 남용, 약간의 기능상실
	4 자주 남용, 심각한 기능상실, 치료 요
기타 약물습관: .....	0 아무 지장 없음
(입소하기 전)	1 때로 남용, 약간의 기능상실
	2 자주 남용, 심각한 기능상실, 치료 요
테도: .....	0 변화 원함; 이해빠름
	3 의존적; 자기못해 의무이행
	5 자기합리화; 부정적; 변화가능성 없음
초범연령: .....	0 24세 이상
(혹은 소년기소)	2 20-23
	4 19세 이하
과거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판결 유무: .....	0 없음
(성인범 혹은 소년범)	4 1번 이상
과거 집행유예나 가석방 취소 유무: .....	0 없음
(성인범 혹은 소년범)	4 한 번 이상
과거 중죄 횟수: .....	0 없음
(혹은 소년기소)	2 한 번
	4 두 번 이상
소년범의 본 범 내용: .....	2 강도, 절도, 차량절도
	3 투표나 문서위조
소년범의 본 범 내용: .....	15 있음
(흥기상용, 폭력 위협 관련 범행)	0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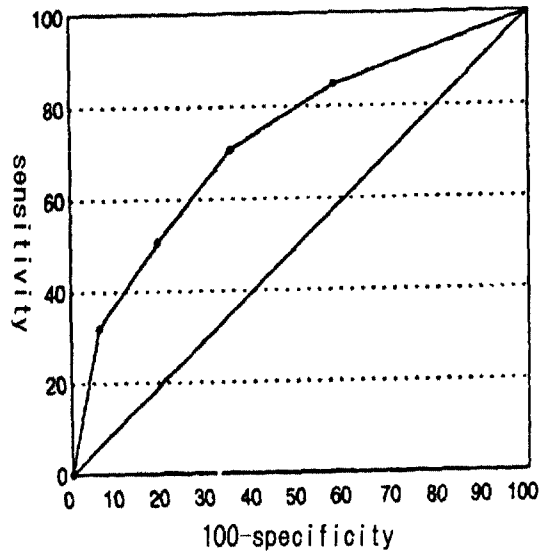
총점

성 판단 지표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Static-99는 특히 성폭행의 재범예측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위험성 평정체제의 준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 및 전과기록을 토대로 하여 해당 범죄자의 과거 범죄전력에 대해 상세하게 질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제시되었던 미연방 가석방 지침에서처럼 전과의 내용이나 초범의 연령 등 본 범의 죄질보다는 판단대상자의 과거 전력에 더 관심이 많다. 이는 미래의 재범예측에는 본 범의 잔인성보다 과거의 행동적 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논리적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 범죄통계적 정적요인을 근거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서는, 위험성 판단의 결과, 사회로 복귀하게 된 범죄 경력자들이 얼마나 재범을 저지르는가를 확인하여 보면 될 것이다. 그림 1에는 SIR의 재범예측력이 도식화되어 있다. 원래 신호탐지이론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은 4 가지 예측가능성에 근거한다. 우선 위험하다고 예측한 범죄자가 후에 진짜로 재범을 하는 경우(TP; True Positive), 위험하다고 예측하였으나 재범을 하지 않는 경우(FP; False Positive), 위험하지 않다고 예측하였던 범죄자가 나중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TN; True Negative), 위험하지 않다고 예측하였으나 후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FN; False Negative) 네 가지가 재범예측 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일 것이다(Metz, 1984). 이 네 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예측력에 관한 두 가지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측도구의 민감성(sensitivity)과 한정성(specificity)이다. 참고로

민감성 지표는  $TP/(TP+FN)$ 으로 한정성 지표는  $TN/(FP+TN)$ 으로 산출한다. 이들 두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정한 재범자를 잘 맞출 확률과 진정한 비재범자를 잘 맞출 확률은 증가하는 것이다.

그림 1 재범예측을 위한 SIR 척도의 ROC 분석 (Bonta, Harman, Hann, & Cormier, 1996)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재범예측을 하고, 후에 준거행동을 토대로 ROC 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그림 1에서의 곡선은 SIR과 같은 예측의 도구가 변별기준을 중심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재범을 예측해주는지 하는 효과크기(effect size)를 반영한다. TP와 FP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AUC(Area Under Curve)는 만일 100%의 TP와 0%의 FP를 기록하면 면적은 1 혹은 100이 된다(e.g., high sensitivity). 하지만 만일 재범예측의 기준이 진정한 재범자 중 단지 50%만을 제대로 예측해내고 진정한 비재범자 중 50%를 재범할 것

이라 잘못 예측하게 되면 50 혹은 .5의 AUC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측도구들은 FP에 비하여 TP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를 기대한다. 이런 ROC 분석은 기저율이나 선별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Loeber & Dishion, 1983)에 최근에는 다양한 예언타당도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Cohen(1992)에 따르자면 .70 이상의 AUC는 효과크기(d) .80 혹은 상관계수 .50에 대응되며, AUC .65는 d .50, 상관계수 .10에 해당되며, AUC .50은 d 0, 상관계수 0에 대응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대로 (e.g., Bonta et al, 1996) 정적 위험요인을 근거로 한 SIR의 예측력은 확연히 우연수준을 넘어서서 약 .74에 이르는데 이는 정적 위험요인만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재범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적 위험성 평가체제의 예측력이 대략 .70 대인 것으로 보고 되는 또 다른 증거들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Hanson & Thornton, 1999).

### 심리학적 평가도구에 근거한 위험성 평가체제

정적 위험요인만을 토대로 하여서도 정신의학적 위험성 평가보다는 훨씬 재범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준다는 지배적인 인식(e.g., Grove, Zald, Lebow, Snitz, & Nelson, 2000; Mossman, 1994)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인 평가도구는 여전히 교정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특히 다양한 처우방안의 배분 시 해당 수형자와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심리학적인 평가도구를 이용한 임상적인 위험성 진단은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좌우할

수 있다. Van Voorhis 등(2000)은 이를 특히 반응성(responsivity)의 원칙이라 지칭하면서 수형자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특성이 서로 잘 들어맞아야 프로그램의 교정효과가 최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6에는 Megargee와 Bohn (1979)이 제시하였던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에 근거한 수형자 유형에 대하여 Zager(1988)가 유형별 행동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MMPI-2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개인 프로파일의 약 66%까지 유형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 33%의 사례들은 추후에 검토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분류체제는 수형자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진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교도소 내에서의 적응 상의 문제를 예측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다(Megargee, 1994).

수형기간 동안의 적응문제를 예측함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평가도구들의 유용함은 Lee와 Edens(2004)의 연구에서 재확인되었는데, 범 죄통계적인 위험요인들(AUC = .64)만으로 문제행동을 예측할 때보다는 심리학적인 평가 지표들(AUC = .83)을 함께 이용했을 때 수형자들의 시설 내 문제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소위 직업적인 전과자, 즉 전과가 매우 많은 수형자들은 수형생활이 익숙치 않은 신경증적인 수형자들(e.g., Van Voorhis et al, 2000)보다 시설 내에서는 더 적응적이라는 사실이 뒷받침하여 준다.

이와 같이 MMPI 검사로 나타난 수형자들의 유형은 적절한 처우방안의 선택에 매우 진단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에는 MMPI 이외에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표 6. MMPI 점수를 근거로 한 수형자 프로파일

프로파일유형	해 석
Item	MMPI의 거의 모든 척도가 70점 이하로서 점수분포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교정당국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적은 편이다.
Easy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분포를 가진다. 종종 Hy와 Pd는 높은 점수분포를 보이나 프로파일은 오른쪽으로 내리막 경사를 가진다. 이들은 명석하고 안정적이며, 적응을 잘하며, 좋은 인적 지원세력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다.
Baker	이 유형은 전형적으로 Pd와 D 척도가 약간 높으며 오른쪽으로 내리막 경사를 지나는 점수분포를 지닌다(중간 정도). 부적절하고 불안해하며, 활동이 위축되고, 독단적이며, 알콜남용의 경향이 있다.
Abel	Pd와 Ma 척도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지닌다. 이들은 충동적이며, 조작적인 면도 있으나 매력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구급에도 비교적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orge	이 유형은 Baker와 유사한 점수분포를 가지나 Hs, D, Hy 척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분포를 지닌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순종적이지만 불안해하며, 학습된 범죄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고, 종종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elta	Pd 척도에는 중간 이상 높은 정도에 이르는 점수분포를 가지나, 나머지 척도는 점수분포가 70이하이며, 비도덕적, 쾌락주의적, 자기중심적, 조작적이나 명석하며, 동료나 권력기관 등과 관계가 좋지 않은 충동적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Jupiter	오른쪽으로 오르막 경사를 가지는 중간 정도에서 높은 정도의 점수분포가 있으며 전형적으로 Sc, Ma, Pt에서 높은 점수를 지닌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출소 후에 더 잘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Foxtrot	이 유형은 8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몇몇 척도에서 기록하고 간혹 기타 척도에서도 70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다. Sc, Ma, Pd의 3 가지 척도가 점점 점수가 높아지는 오르막 경사를 보인다. 이들은 강인하고, 서민생활의 물정에 밝으며, 냉소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지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결점이 있고, 지나칠 정도로 범죄경력이 많으며, 교도소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rlie	80이 넘는 척도가 있고 일부 척도도 70이 넘는 높은 점수분포가 있으며, 전형적으로 Sc, Pa, Pd 척도의 고도가 가장 높으며, 오른쪽 오르막으로 경사가 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적대적이고, 염세적이며, 격리되고, 공격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들은 대체로 오랜 기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전과경력도 많으며 복합적인 약물남용의 경험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ow	적어도 3가지 척도가 70이상의 T점수를 보이는 가장 높은 점수분포를 가지며, 특히 개별적 척도에 대한 점수분포라기보다는 복수의 점수분포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불안정하고, 흥분되고, 정신적 장애와 문제를 기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따라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MCFI(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를 근거로 한 잠재적 위험성의 유형분류 체계의 사용이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표준화된 성격 검사들은 수형자들의 분류 등 진단적인 목적

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석방 심의 등 의사결정과정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도구들의 구체적인 재범예측력은 알려진 바 없으나 최근의 한 연구(Listwan, Sperber, Spruance, & Van Voorhis, 2003)는 성

격검사 결과 산출된 수형자들의 유형 중 신경증적인 유형의 수감자들은 출소 후 10년에 걸친 재범가능성이 공격적인 유형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 역동적 위험요인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체제

경험적인 연구들은 개인의 범죄적 특성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측면의 평가가, 범죄통계에 기초한 정적 위험요인 이외에도 재범의 부가적인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Hoge, 1999; Loza, Dahliwal, Kroner, Loza-Fanous, 2000). 역동적인 위험요인은 나아가 적절한 처우방안의 선택과 죄질 개선의 진전도 파악에 간략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역동적인 위험요인은 주로 해당 범죄자의 사회환경적 특성이나 약물 혹은 정신병력 등과 같이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자료들을 지칭하는데, 최근에는 범죄와 관련된 태도나 인지구조, 충동성 등의 감정적인 특성들까지를 광범위한

역동적인 위험요인에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또한 대다수의 도구들이 일단은 범죄통계적인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더라도 역동적 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면담 후 임상적인 판단을 내려 최종적인 평가에 포함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Psychopathy Checklist - Revised(PCL-R; Hare, 1991)의 등장과 함께 범죄통계적 자료를 근거로 위험성의 개별 요소들을 판단하는 도구들이 현재는 이 분야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아래에 제시된 Level of Service Inventory - Revised (LSI-R; Andrews & Bonta, 1995), Violent Risk Appraisal Guide (VRAG; 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Historical, Clinical Risk - 20 (HCR-20; Webster, Douglas, Eaves, & Hart, 1997) 등이 해당 범죄자의 범죄경력 자료와 추가적인 구조적 인터뷰를 통하여 역동적인 위험요인을 평정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험성 평가도구들이다. 표 7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도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인데 우선 첫째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

표 7. 역동적 위험요인을 측정하는 위험성 평가도구

위험영역	도구명
직장에서의 위험요소	Workplace Risk Assessment (WRA-20) Employee Risk Assessment (ERA-20)
배우자에 대한 폭력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 Guide (SARA)
폭력	Hare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PCL-R) Historical Clinical Risk-20 (HCR-20) Violent Risk Appraisal Guide (VRAG)
성폭력	Sex Offender Risk Appraisal Guide (SORAG) Sexual Violence Risk-20 (SVR-20) Static-99/ Static 2002 Sex Offender Needs Assessment Rating (SONAR)

전력에 대한 사건보고서나 전과보고서를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도구들은 범죄통계적(actuarial) 위험성 평가도구에 포함되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범죄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역동적 위험요인들만을 평가한다. 두 번째, 역동적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MMPI와 같은 지필보고식 검사가 아니라 일정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한 세밀한 관찰을 측정의 기본양식으로 한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의도적인 반응왜곡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특징은 검사의 개발목적이 MMPI나 CPI, MCMI 혹은 PAI처럼 정신건강 일반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의 범죄위험 가능성만을 측정하도록 매우 협소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상적 평가도구들보다 고안단계에서부터 특정한 범죄의 역동적인 위험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도구들이 해당 범죄의 재범을 예측해내는 데 있어서 일반 심리검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예언타당도를 지니는 것은 당연히 예상해볼 수 있는 일이다. 표 8과 표 9에는 전과 및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들 중, 특히 역동적 위험요인의 평가에 측정의 목표를 두고 있는, 네 개의 도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개별 도구들마다 어떤 위험인자들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적 위험성 평가도구들보다 해당 범죄자의 역동적인, 특히 심리적인 요인들까지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SI의 경우 정적 위험성 평가체제들과 달리 임의로 가중치를 설정하는 대신 전과력 조차도 여러 개의 독립된 문항들로 대치를

하였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환경적인 특성들, 나아가 약물중독이나 사회적 관계 등의 역동적인 요인, 감정적인 문제, 정신병력, 그리고 친 범죄적 태도까지를 위험요인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비교적 판단이 쉬운 LSI에 비해 PCL-R, HCR-20, VRAG는 보다 더 전문적인 판단을 평가자에게 요구한다. 이들 세 가지 도구들은 전통적인 심리검사의 양식인 지필검사 방식을 택하지는 않고 있으나 심층적인 범죄심리적 특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평가자들은 일정한 훈련을 거쳐 범죄통계적 사실들을 토대로 표 9에 제시된 기준들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다. 이때 표준화된 훈련절차는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정신의학적인 위험성 평가와 이 도구들이 다른 점은 첫째 이와 같은 판단의 일치도를 확보하는 과정, 둘째 모든 지표에 대한 판단이 사건기록이나 전과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훈련을 받은 평가자라면 누구나 동일한 평가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위험성 평가 시 최근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도구들에 있어 흥미로운 공통점은 위험성의 기준으로서 정신병질(psychopathy)이라는 개념을 주요지표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신병질(psychopaths)이라는 개념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범죄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북미지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범죄자들의 정신병질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재범 예측의 기준으로서 인정받고 있다(Bartol, 1999; Cleckly, 1976; Hare, 1996). 최초로 정신병질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정의를 내린 Cleckly(1976)에 따르면

표 8. Level of Supervision Inventory (Andrews & Bonra, 1995)

범죄전력	의식주
_____ 1 과거 유죄판결횟수	_____ 27 불만
_____ 2 두 번 이상 유죄	_____ 28 지난 해 3번 이상 주소 이전
_____ 3 세 번 이상 유죄	_____ 29 범죄적 환경
_____ 4 세 번 이상이면 그 횟수	<b>여가시간</b>
_____ 5 16세 이전에 체포되었던 경험	_____ 30 특별한 활동 없음
_____ 6 교도소 수용경험	_____ 31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음
_____ 7 탈옥 경험	<b>동료</b>
_____ 8 수용시설 규율위반 경험	_____ 32 사회적 고립
_____ 9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 보류된 경험	_____ 33 몇몇 전과자들과 친분
_____ 10 폭행이나 폭력관련 전력	_____ 34 전과자들과 친구
<b>교육/취업</b>	_____ 35 범죄 저항적 사람들과 친분
_____ 11 현재 취업 중	_____ 36 범죄 저항적 사람들과 친구
_____ 12 종종 실업	<b>음주/약물 문제</b>
_____ 13 취업경험 없음	_____ 37 음주문제 있었음
_____ 14 해고 경험	_____ 38 약물문제 있었음
<b>교육정도:</b>	_____ 39 현재 음주문제 있음
_____ 15 10학년 미만	_____ 40 현재 약물문제 있으면 해당 약물명
_____ 16 12학년 미만	<b>#39 혹은 #40 응답 시 #41-#45 점수 계산</b>
_____ 17 1번 이상 정확히나 퇴학당한 경험	_____ 41 법률위반
주부나 연금수령자: # 18	_____ 42 부부관계/가족관계 문제
학교나 직장, 실업 중인 자: # 18, # 19, # 20	_____ 43 학교/직장 문제
_____ 18 활동 참가	_____ 44 의료문제
_____ 19 또래 상호작용	_____ 45 다른 이상적 문제 있으면 기록
_____ 20 상사와 상호작용	<b>정서/성격</b>
<b>재정</b>	_____ 46 적당한 장애
_____ 21 문제 있음	_____ 47 심한 장애
_____ 22 연금에 의존	_____ 48 과거 정신과적 치료
<b>가족/혼인관계</b>	_____ 49 현재 정신과적 치료
_____ 23 부부간 불만족, 혹은 유사상황	_____ 50 심리평가 시 문제확인
_____ 24 따스하지 않으나 부모 동거	<b>태도/방향</b>
_____ 25 따스하지 않으나 친척 동거	_____ 51 범죄 지지적
_____ 26 범죄자 가족/배우자	_____ 52 반 관습적
	_____ 53 양형에 부정적
	_____ 54 관리감독에 부정적

**RECOMMENDATION:**

\*LSI 총점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지니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 달성의 도구로서 이용하며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Hare(1980)는 이런 특성들을 계

량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는 22문항짜리 도구를 개발하였고 후에 두 항목을 줄여 20문항짜리 단축형 도구(Hare, 1991)를 만들어 현장 적용에 편의를 도모하였다(표 9). 최근의 연구들(Hare, 1996; Hare, Forth, Stachan, 1992)은 전체 인구의 약 1%, 그리고 수용되어 있는

표 9 세 가지 심리역동적 위험요인 평가도구

HCR-20 (Webster, Douglas, Eaves, & Hart, 1997)		PCL-R (Hare, 1991)		VRAG (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과거 전력 척도 (Historical Scale)	과거 폭행 유무	요인 1: 대인관계 변수	요인 2: 사회적 일탈 변수	PCL 점수
	최초 폭행 연령	경쾌한/피상적인 매력	자극에 대한 욕구/쉽게 권태 느낌	초등학교 적용
	대인관계 불안정	과대망상	기생하는 생활습관	최초 범죄연령
	직업 문제	병리적인 거짓말	행동통제력 부족	DSM III 성격장애
	약물 오남용 문제	속이고 조작하기	이동기 행동상의 문제	16세 이전 부모로부터 격리
	주요 정신장애	후회, 죄의식 결여	현실적 장기목표 주배	과거 조건부 가석방에 의 실패경력
	정신병적 소양	낮은 정서성	충동성	비폭력 범죄의 전력
	초기 부적응	무감각/공감능력 부족	무책임함	결혼한 적 없음
	성격장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청소년 비행	DSM III 정신분열증
과거 보호관찰 실패		조건부 가석방의 취소	범죄시 피해자 상해	
임상척도 (Clinical Scale)	통찰력 부족		다양한 범죄경력	음주경력
	부정적 태도			범죄 시 남성피해자 있음
	현재 주요 장신장애 증상			
	충동성			
	치료 무반응			
위험관리 척도 (Risk Management Scale)	계획의 실현가능성 회박			
	불안요인에 노출			
	지시관계 부족			
	치료에 무반응적			
	스트레스			

범죄자들의 약 15%에서 25% 정도가 이 범주에 해당되며 이들의 재범가능성은 그 어떤 범죄집단보다도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범죄자들 중 재범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신병질자 집단의 신경심리적, 인지행동적 특성은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다(Kosson, Suchy, Mayer, & Libby, 2002; Patrick, Bradley, & Lang, 1993; Patrick, Cuthbert, & Lang, 1994; Sutton, Vitale, & Newman, 2002). 특히 Raine(1993)은 정신병질자의 뇌기능은 정상인이나 정신병질적 특성을 지니지 않은 전과자들과는 상당히 다른데,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의 신경활동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정신병질자들의 신경기능상의 이상은 이제 상당히 타당한 사실들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아,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HCR-20, VRAG 등의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정신병질적 특성에 대한 판단을 재범예측의 주요기준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캐나다 대법원(FC 870, T-1725-02 Vancouver, B.C. [2003])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근거로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때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사회과학, 행동과학, 의학 분야에서 대학원 수준의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PCL-R 등과 같은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두 평가자의 평균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도구들의 예언타당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Hare, 1996; Hare et al, 1992; Harris, Rice, Cormier, 2002; Harris, Rice, & Quincey,

1993; Douglas, Ogloff, Nicholls, & Grant, 1999)은 PCL-R의 폭력성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평균 예측력(AUC)은 약 .68,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73, 성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69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HCR-20의 신체적 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76, 폭력적 범법행위에 관한 예측력(AUC)은 .80이며 VRAG의 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83, 성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71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론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이 같은 연구를 하였는가에 따라 예측력의 정도가 약간씩 변동되고는 있지만 이들 지표들은 개별 연구들에서 산출된 AUC를 평균한 지표로서 이해하면 된다. 결과들은 대충 PCL-R 이후 개발된 VRAG나 HCR-20의 예언타당도를 약간씩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이들 도구들이 PCL-R보다 조금 더 많은 예측치들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도구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본기법 상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데, 해당 범죄자의 범기록을 심리적 평가도구들과 함께 추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이 일정 훈련을 마친 후 본인들의 임상적 지식과 범죄통계적 기록을 토대로 표 9에 제시된 것과 같은 지표들을 판정하게 된다. 이런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측정의 방식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또한 미래의 재범가능성을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예측하여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의 많은 법정, 나아가 사형선고 시에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e.g., Edens, Petrila, & Buffington-Vollum, 2001).

## 결론 및 논의

이 논문에서는 범죄자의 선별, 분류 및 처우 적용, 그리고 재범예측 등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범죄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 및 절차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살펴보았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제 내에서도 범죄적 위험성에 관한 평가 및 예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소년피의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소년범 환경조사서와 비행성예측자료표는 정적 위험요인을 토대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한다. 평가의 단계는 다분히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 있기에 활용적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편의를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에 비해 서울지방검찰청의 “푸른 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성의 평가절차는 일단 청소년/범죄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청소년의 위험성과 환경을 다시 한번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가족의 기능적 구조와 환경,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 등 상담의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 역동적인 위험요인을 평가절차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상담기록이 실제적으로 검사의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소년 및 성인에 관한 분류심사의 절차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심리화학적 위험성 평가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여러 가지 표준화된 심리검사의 활용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문제는 이런 분류의 결과가 실제로 재

범의 예측에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수행되는 재범연구가 전무후무한 현재의 실정로서는 개별 위험요인들에 대한 재범예측력을 환산해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분류 및 가석방의 체제가 지나치게 본범의 내용에 의존하고 있기에 수감자 개인의 범죄전력에 근거한 개별적인 위험성 평가는 상당부분 등안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처벌의 옹보적 기능만을 중요시 해온 우리나라의 법 환경은 수형자가 당장 처벌을 받게 되는 본 범 이외에 과거의 전력이나 환경적 특성, 범죄적 사고경향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행동가능성 등을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전과에 주로 근거를 두고 보호감호 대상자들 결정하는 심사절차에 대한 문제점의 제기는 과연 우리가 잠재적 범죄위험성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더군다나 법적 의사결정자가 아닌 민간인들(아무리 전문지식을 지니고 훈련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에 의한 판단의 결과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더욱 심각한 논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배심원단 제도가 없는 대륙법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국내법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법관이 아닌 비실무자들의 판정을 법적 의사결정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기의식을 조장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평가는 법적 전문지식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미 발생한 본 범에 대한 죄질의 경중을 따지는 일은 범조문의 분석적 적용과 실무경험으로 가능하겠으나, 범죄성향의 진전도를 파악하여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야 하는 일은 법적 지식만으로 결코 달성가능한 일이 아니다. 예컨대 가석방이나 보호감호제는 해당 수형자가 애당초 저지른 범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행동가능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유예제도 또한 본 범의 죄질만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의 잠재적인 위험가능성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범죄 위험성의 평가는 국내에서도 불가피하게 실시될 수밖에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구나 절차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전과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문제는 애초에 이 같은 도구들이나 절차들을 개발하는 단계가 다분히 편의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위험성평가를 내려야 하는 주체들도 전혀 행동평가의 전문가들이 아니란 점이다. 더군다나 평가절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기는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위험성 평가의 절차들은 그때마다 해당 부처의 정책적 대안으로서 기획되었기에, 극히 제한된 기간 내에 개발을 하였어야만 했었고, 따라서 개발 자체가 중요했는지, 그렇게 개발된 도구나 절차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획적으로 구성된 위험성의 평가절차는 때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투사검사를 소년범의 위험성 평가에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서 심리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현장실무자들이 이런 어려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을 내리는 일은 위험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잠재적 위험성을 판정 받는 당사자의 인권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돌아가 복귀하게 되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의 평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차피 법 절차의 특성 상 위험성의 평가가 불가피하다면 실무자들은 이 분야를 좀더 전문화시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 개발되어 검증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이제 상당히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 물론 해당 수형자가 본 범이 아닌 미래행동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법철학적인 논쟁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행 법 절차 상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단기적인 법령의 입안을 넘어서서, 과연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에 관한 효과성 검증에까지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관찰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런 제도의 적용타당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광배 (2001). 법심리학. 학지사.
- 법무부 교정국 (2002). 국민의 정부 교정행정개선.
- 법무연수원 (2002). 범죄백서.
- 오영근 (1998).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법무부보고서.
- 이윤호 (1999). 형사정책. 박문각.
- 이춘화 (2001). 소년사건의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진수명 (2001). 보호관찰과 과학적 분류처우 방법. 『보호』 12호. 171-221쪽.
- Andrews, D. A., & Bonta, J. (1995). *LSI-R: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 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Inc.
- Andrews, D. A., & Bonta, J.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2nd 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 Baird, C., Heinz, R., & Bemus, B. (1979). *The Wisconsin Case Classification/ Staff Development Project*. Project Report No. 14. Madison, WI: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Division of Corrections.
- Baird, C., Prestine, R., & Klockziem, B. (1989). *Revalidation of the Wisconsin Probation/ Prole Classification System*. Madison, WI: National Council on Crime & Delinquency.
- Bartol, C. R. (1999).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 5th ed. NJ: Prentice-Hall
- Bonta, J., & Cormier, R. B. (1999). Corrections research in Canada: Impressive progress and promising prospect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1(2), 235-247.
- Cleckly, H. (1976). *The Mask of Sanity* 5th ed. St Louis, MO: Mosby.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55-159.
- Dawes, R. M., Faust, D., & Meehl, P. E. (1989). Clinical versus actuarial judgment. *Science*, 243, 1668-1674.
- Dawes, R. M., Faust, D., & Meehl, P. E. (1993). Statistical prediction versus clinical prediction: Improving what works. In G. Keren, & C. Lewis (Eds.), *A handbook for data analysis in the behavioral sciences: Methodological issues* (pp.351?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dens, J. F., Petrila, J., & Buffington-Vollum, J. K. (2001). Psychopathy and the death penalty: Can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dentify offenders who represent a continuing threat to society? *Journal of Psychiatry & Law*, 29(4) 433-448.
- Douglas, K. S., Ogloff, J. R. P., Nicholls, T. L., & Grant, I. (1999). Assessing risk for violence among psychiatric patients: The HCR-20 risk assessment scheme and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917-930.
- Farrington, D. P. (1987). Early precursors of frequent offending. In J. Q. Wilson and G. C. Lounsbury (eds.), *From Children to Citizen, 3: Families, Schools, and Delinquency Prevention*, New York: Springer.
- Gendreau, P., & Ross, R. (1987). Revivification of rehabilitation: Evidence from the 1980s. *Justice Quarterly*, 4, 349-409.
- Gendreau, P. (1996). Offender rehabilitation: What we know and what needs to be don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144-161.
- Grann, M., Belfrage, H., & Tengstrom, A. (2000). Actuarial assessment of risk for violence: Predictive validity of the VRAG and historical part of the HCR-20.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97-114.
- Grove, W. M., & Meehl, P. E. (1996). Comparative efficiency of informal (subjective, impressionistic) and formal (mechanical, algorithmic) prediction procedures: The clinical-statistical controversy.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 293-323.
- Grove, W. G., Zald, D. H., Lebow, B., Snitz, B., & Nelson, C. (2000). Clinical versus statistical predic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Assessment*, 12, 19-30.

- Hanson, R.K., & Thornton, D.M. (1999). *Static 99: Improving Actuarial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s*. Ottawa: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 Hare, R. D. (1980). A research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criminal popu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111-119.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are, R. D., Forth, A. E., & Stachan, K. E. (1992). Psychopathy and crime across the life span. In R. D. Peters, R. J. McMahon, & V. L. Quinsey (eds.), *Aggression and Violence Throughout the Life Span*. Newbury Park, CA: Sage.
-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2002). Prospective replication of 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in predicting violent recidivism among forensic patients. *Law and Human Behavior, 26*, 377-394.
- Harris, G. T., Rice, M. E., & Quinsey, V. L. (1993). Violent recidivism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e development of a statistical prediction instru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 315-335.
- Hoge, R. D. (1999). An expanded role for psychological assessments in juvenile justice system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 251-266.
- Hoffman, P. (1994). Twenty years of operational use of a risk prediction instrument: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s salient factor sco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 477-494.
- Kosson, D. S., Suchy, Y., Mayer, A. R., & Libby, J. (2002). Facial affect recognition in criminal psychopaths. *Emotion, 2*, 398-411.
- Lee, S. J., & Edens, J. F. (2004). Exploring predictors of institutional misbehavior among male Korean inmat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in press.
- Listwan, S. J., Sperber, K. G., Spruance, L. M., & Van Voorhis, P. (2003). High anxiety offenders in correctional setting: It's time for another look. *2003 Program for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55th Annual Meeting*, 199-199.
- Loeber, R., & Dishion, T.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Loza, W., Dahliwal, G., Kroner, D. G., Loza-Fanous, A. (2000). Reliability,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ies of the self-appraisal questionnaire: A tool for assessing violent and nonviolent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356-374.
- Megargee, E. (1994). Using the Megargee MMPI-based classification with the MMPI-2's of male prison inmates. *Psychological Assessment, 6*, 337-344.
- Megargee, E., & Bohn, M. (1979). *Classifying Criminal Offenders: A New System Based on the MMPI*.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etz, C. E. (1984). Statistical analysis of ROC data in evaluating diagnostic performance. In D. E. Herbert & R. H. Myers (Ed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pplications in the health sciences* (pp. 365-384). Washington, DC: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 Monahan, J. (1981). *The Clinical Prediction of Violent Behavio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onahan, J. (1984). The prediction of violent behavior: Toward a second generation of theory and polic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10-15.

- Monahan, J. (1993). Limiting therapist exposure to Tarasoff liability: Guidelines for risk containment. *American Psychologist*, 48, 242-250.
- Monahan, J. (1996). Violence prediction: The past twenty and the next twenty yea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107-120.
- Monahan, J., Steadman, H. J., Silver, E., Appelbaum, P. S., Robbins, P. C., Mulvey, E. P., Roth, L. H., Grisso, T., & Banks, S. (2001). *Rethinking risk assessment: The MacArthur study of mental disorder and viol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ssman, D. (1994). Assessing predictions of violence: Being accurate about accur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783-792.
- Nuffield, J. (1989). *Parole Decision-Making in Canada: Research Towards Decision Guidelines*. Ottawa: Solicitor General Canada.
- Patrick, C. J., Bradley, M. M., & Lang, P. J. (1993).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Startle reflex mod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82-92.
- Patrick, C. J., Cuthbert, B. N., & Lang, P. J. (1994).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Fear image process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23-534.
- Quay, H. (1984). *Managing Adult Inmates: Classification for Housing and Program Assignments*. College Park, MD: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Quinsey, V. L.,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1998). *Violent Offenders: Appraising and Managing Risk*.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aine, A. (1993). *The Psychopathology of Crime*. New York: Academic Press.
- Sutton, S.K., Vitale, J. E., & Newman, J. P. (2002). Emotion among women with psychopathy during picture percep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610-619.
- Van Voorhis, P., Braswell, M., & Lester, D. (2000). *Correctional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4th ed.* OH: Anderson.
- Webster, C. D., Douglas, K. S., Eaves, D., & Hart, S. D. (1997). HCR-20: Assessing the Risk for Violence (Version 2). Vancouver: Mental Health, Law, and Policy Institute, Simon Fraser University.
- Zager, L. (1988). "MMPI-Based Criminal Classification System: A Review,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5, 39-57.
- <http://www.ncjrs.org/html/bja/199773/ch2.html>
- [http://www.css.edu/users/dswenson/web/Powerpoints/Se  
xOffender/Risk\\_Assessment](http://www.css.edu/users/dswenson/web/Powerpoints/Se%20Offender/Risk_Assessment)
- <http://www.mhcr-research.com/vragsum.htm>

1 차원고접수일 : 2003. 9. 22  
수정원고접수일 : 2003. 11. 26  
최종게재결정일 : 2003. 12. 2

## Risk assessment procedures and their applications

Soo Jung Lee                      Okkyung Yoon  
Forensic Psychology · Corrections, Kyonggi University

This paper reviewed the present status of risk assessment procedures in forensic settings. First of all, it was explained how risk was assessed at each stage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pointed out what could be potential problems in this system. Then several advanced risk assessment tools in the western countries were introduced and their predictive validity indices were compared. The ways to improve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 in Korea were discussed at last.

*Key words: risk assessment, recidivism prediction, expert testimony*